

수원지방법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2131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종중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7. 15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종중은 용인시 처인구 D 답 43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(20㎡)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

나.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주문 제1항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답 43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 B종중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 20㎡(이하 ‘이 사건 점유토지’라고 한다)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, 피고 C은 위 침범 부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

### 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또한 피고 C은 위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점유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위 토지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종중이므로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)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형식

## 면 적 표 시

| 지번 부호  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<input type="text"/> ㄱ | 371   |
| <input type="text"/> ㄴ | 40    |
| <input type="text"/> ㄷ | 20    |
| <input type="text"/>   | 431   |



